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11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박덕흠 · 김예지 · 구자근
고동진 · 김대식 · 이만희
임종득 · 박정하 · 김정재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が必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

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9.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 등) ①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감독을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종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플랫폼 사업자

2의3.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플랫폼 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u><신 설></u>	19.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u><신 설></u>	20.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u><신 설></u>	제19조의6(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 등) ① 플랫폼 사업자는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감독을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종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과태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u><신 설></u>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u>조치의무를 위반한 플랫폼 사</u> <u>업자</u> <u>2의3.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u> <u>신고의무를 위반한 플랫폼 사</u> <u>업자</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